

제420회 임시회
'24. 9. 4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8월 2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
3. 제안이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6)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 :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 - 의료원별 경영 정상화까지 소요 예상금액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지원 후 도에서 이자보전을 통한 의료원 재정부담 경감
-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- 출연금액 : 660,000천원

6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(단위 : 천원)

출연기관	출연액			비고
	계(A=B+C)	기정(B)	금회추경(C)	
계	660,000	0	660,000	
청주의료원	360,000	0	360,000	
충주의료원	300,000	0	300,000	

※ '23. 11. ~ 12. 지역개발기금 220억원 용자(청주 120억, 충주 100억)

-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, 발생이자(3%)

- 도, 5년 거치기간 이자만 지원('24. ~ 28.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음창규)

가. 제출배경

○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청주·충주의료원이 2022년 6월 전담병원 해제 이후 심각한 경영 악화에 직면함.

-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양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제15조제1항제5호7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8)에 따라 2023년 9월,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및 연이율 3%의 조건으로 220억을 용자 지원했음.

※용자금(총 220억원): 청주의료원 120억원, 충주의료원 100억원

○ 그러나 이후에도 양 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연 100억 이상씩 누적되고 있어 충청북도에서는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으로 용자금의 이자분(연이율 3%)을 출연하기로 함.

7) 제15조(용자대상)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

8) 제7조(용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) ① 조례 제15조 용자대상 사업의 용자이율을 연리 3퍼센트로 한다.

②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

- 이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⁹⁾에 따라 출연 전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출연계획안을 제출한 것임.

※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현황

- 1) 설치근거: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
- 2) 설치목적: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
- 3) 설치년도: 2017년
- 4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2023년도 말 조성액 ^㉑	2024년도 조성계획			2024년도 말 조성액 ^㉒ = ^㉓ + ^㉑
	수입 ^㉔	지출 ^㉕	증감 ^㉖ = ^㉔ - ^㉕	
848,052,710	218,383,566	211,489,025	6,894,541	854,947,251

※ 충청북도,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청주·충주의료원은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임.
 - 법 제18조에 따라 운영은 사업 수익금, 보조금, 출연금,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바, 본 계획안에 따른 용자금 이자상환 지원을 위한 출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- 또한 청주·충주 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기존 입원 환자들의 타병원 전원조치, 진료과 축소 및 일부 병동 폐쇄 등 적자발생을 감내하며 코로나19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해 왔음.

9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,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영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약 4.3년이 소요되는 바, 이 기간에 준하는 회복기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담 병원의 회복기간을 6개월로 잡고 이에 상응한 회복기 지원금만 지급 했음.
- 그 결과 청주·충주 의료원은 연 100억원 이상의 적자 발생으로 직원들의 임금체불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바,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내용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청주·충주의료원 2019년 대비 2023년 경영실적>

(단위) 천원

	2019년 : 코로나19 이전						2023년 : 코로나19 회복기						
	입원수익	외래수익 (기타의료수 익포함)	의료수익	의료비용	의료손익	당기 순이익 (손실)	입원수익	외래수익 (기타의료수 익포함)	의료수익	의료비용	의료손익	당기 순이익 (손실)	2019년대비
청주	38,171,852	20,050,711	58,202,563	62,869,528	-4,666,965	405,242	23,934,591	20,244,108	44,178,699	70,293,438	-26,114,739	-15,473,470	-15,878,712
충주	24,094,382	13,475,843	37,570,225	40,261,003	-2,690,778	-50,227	17,470,144	13,704,151	31,174,295	47,931,617	-16,757,322	-11,272,543	-11,222,316

- 다만, 절차상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(동의)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, 본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의 경우, 출연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동시 제출된 바,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을 위한 출연을 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 내용 및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시기 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절차상 출연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동시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